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9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한정애·안태준·김준형

서영교 • 이수진 • 이학영

박희승 · 문진석 · 한준호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사 용을 제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 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 항 및 제14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벌칙)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u>누</u>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①
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	
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u><신 설></u>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이미
	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u>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제149조의2(벌칙)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
	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
	을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u>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u>
	금에 처한다.